더퍼스트시티 송도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주택은 2022.05.11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완료 후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시면 타 신규 분양 단지 청약 제한 기간 10년 적용됨(규제지역)

※무순위 모집공고일 이전 현재 등본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일 것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일 것

※본 주택은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면 등기이전 후 매매가 가능합니다.

계약 예시- 64G 타입 계약 시(101동 1001호)

분양가: 678,300,000원

1차 계약금(10%): 67,830,000원

잔금(9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610,470,000원

최근 사회적으로 “묻지 마 청약”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 상실이 문제시 되고 있으므로 위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 신청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더퍼스트시티 송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www.the1st-city.co.kr) 으로 대체하여 운영됨을 공지드리며, 청약자(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더퍼스트시티 송도」홈페이지(www.the1st-city.co.kr) 를 통해 분양 일정, 청약 안내 및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운영 관련 안내
 - 당첨자는 자격 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방문 시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더퍼스트시티 송도」분양홍보관 내 분양 상담 전화(☎ 032-851-5151) 방문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인원 제한 : 당첨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명만 입장 가능)
 - 예비당첨자의 자격 확인 서류제출 및 동호 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자격 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2.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분양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자
 -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 이상인 자

■ 「더퍼스트시티 송도」분양홍보관 내 분양 상담 전화(☎ 032-851-5151)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26.(화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225**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17.(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906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간**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08월 01일(월)	08월 04일(목)	08월 05일(금) ~ 08월 10일(수)	08월 11일(목)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당사 분양홍보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45번지 1층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60-15 더퍼스트시티 송도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0층 3개동 총 144세대 중 잔여물량 129세대 (2022.05.11.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완료 후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 입주시기 : 2022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 주택	2022-910225	01	039.6513A	39A	10	103	401,501,601,701,1001,310,410,610,710,910
		02	043.6843B	43B	15	103	302,402,502,602,702,902,1002,309,409,509,609,709,809,909,1009
		03	044.2024C	44C	16	103	303,403,503,603,703,803,903,1003,308,408,508,608,708,808,908,1008
		04	045.2719D	45D	16	103	304,404,504,604,704,804,904,1004,307,407,507,607,707,807,907,1007
		05	048.2207F	48F	5	103	406,506,706,806,1006
		06	049.7145E	49E	8	103	305,405,505,605,705,805,905,1005
		07	054.0307I	54I	14	101,102	101동 303,503,603,703,803,903,1003 102동 303,403,603,703,803,903,1003
		08	057.7775H	57H	15	101,102	101동 302,402,502,602,702,802,902,1002 102동 402,502,602,702,802,902,1002
		09	063.7924J	63J	8	102	304,404,504,604,704,804,904,1004
		10	063.4007K	63K	8	101	304,404,504,604,704,804,904,1004
		11	064.9250G	64G	14	101,102	101동 301,401,601,701,801,901,1001 102동 301,401,601,701,801,901,1001
	합 계				129	-	-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발코니 확장비 포함)

(단위: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039.6513A	39A	103	310	134,920,000	202,380,000	-	337,300,000	33,730,000	303,570,000
		103	401	129,520,000	194,280,000	-	323,800,000	32,380,000	291,420,000
		103	410	134,920,000	202,380,000	-	337,300,000	33,730,000	303,570,000
		103	501	133,400,000	200,100,000	-	333,500,000	33,350,000	300,150,000
		103	601	136,000,000	204,000,000	-	340,000,000	34,000,000	306,000,000
		103	610	141,680,000	212,520,000	-	354,200,000	35,420,000	318,780,000
		103	701	136,000,000	204,000,000	-	340,000,000	34,000,000	306,000,000
		103	710	141,680,000	212,520,000	-	354,200,000	35,420,000	318,780,000
		103	910	148,400,000	222,600,000	-	371,000,000	37,100,000	333,900,000
		103	1001	142,480,000	213,720,000	-	356,200,000	35,620,000	320,580,000
043.6843B	43B	103	302	176,480,000	264,720,000	-	441,200,000	44,120,000	397,080,000
		103	309	164,480,000	246,720,000	-	411,200,000	41,120,000	370,080,000

		103	402	168,080,000	252,120,000	-	420,200,000	42,020,000	378,180,000
		103	409	156,640,000	234,960,000	-	391,600,000	39,160,000	352,440,000
		103	502	173,120,000	259,680,000	-	432,800,000	43,280,000	389,520,000
		103	509	161,360,000	242,040,000	-	403,400,000	40,340,000	363,060,000
		103	602	176,480,000	264,720,000	-	441,200,000	44,120,000	397,080,000
		103	609	164,480,000	246,720,000	-	411,200,000	41,120,000	370,080,000
		103	702	176,480,000	264,720,000	-	441,200,000	44,120,000	397,080,000
		103	709	164,480,000	246,720,000	-	411,200,000	41,120,000	370,080,000
		103	809	167,640,000	251,460,000	-	419,100,000	41,910,000	377,190,000
		103	902	184,880,000	277,320,000	-	462,200,000	46,220,000	415,980,000
		103	909	172,320,000	258,480,000	-	430,800,000	43,080,000	387,720,000
		103	1002	184,880,000	277,320,000	-	462,200,000	46,220,000	415,980,000
		103	1009	172,320,000	258,480,000	-	430,800,000	43,080,000	387,720,000
044.2024C	44C	103	303	181,680,000	272,520,000	-	454,200,000	45,420,000	408,780,000
		103	308	169,320,000	253,980,000	-	423,300,000	42,330,000	380,970,000
		103	403	169,800,000	254,700,000	-	424,500,000	42,450,000	382,050,000
		103	408	158,240,000	237,360,000	-	395,600,000	39,560,000	356,040,000
		103	503	174,880,000	262,320,000	-	437,200,000	43,720,000	393,480,000
		103	508	163,000,000	244,500,000	-	407,500,000	40,750,000	366,750,000
		103	603	178,280,000	267,420,000	-	445,700,000	44,570,000	401,130,000
		103	608	166,160,000	249,240,000	-	415,400,000	41,540,000	373,860,000
		103	703	178,280,000	267,420,000	-	445,700,000	44,570,000	401,130,000
		103	708	166,160,000	249,240,000	-	415,400,000	41,540,000	373,860,000
		103	803	181,680,000	272,520,000	-	454,200,000	45,420,000	408,780,000
		103	808	169,320,000	253,980,000	-	423,300,000	42,330,000	380,970,000
		103	903	186,760,000	280,140,000	-	466,900,000	46,690,000	420,210,000
		103	908	174,080,000	261,120,000	-	435,200,000	43,520,000	391,680,000
		103	1003	186,760,000	280,140,000	-	466,900,000	46,690,000	420,210,000
		103	1008	174,080,000	261,120,000	-	435,200,000	43,520,000	391,680,000
045.2719D	45D	103	304	170,600,000	255,900,000	-	426,500,000	42,650,000	383,850,000
		103	307	170,600,000	255,900,000	-	426,500,000	42,650,000	383,850,000
		103	404	162,480,000	243,720,000	-	406,200,000	40,620,000	365,580,000
		103	407	162,480,000	243,720,000	-	406,200,000	40,620,000	365,580,000
		103	504	167,360,000	251,040,000	-	418,400,000	41,840,000	376,560,000
		103	507	167,360,000	251,040,000	-	418,400,000	41,840,000	376,560,000
		103	604	170,600,000	255,900,000	-	426,500,000	42,650,000	383,850,000
		103	607	170,600,000	255,900,000	-	426,500,000	42,650,000	383,850,000
		103	704	170,600,000	255,900,000	-	426,500,000	42,650,000	383,850,000
		103	707	170,600,000	255,900,000	-	426,500,000	42,650,000	383,850,000
		103	804	173,880,000	260,820,000	-	434,700,000	43,470,000	391,230,000

		103	807	173,880,000	260,820,000	-	434,700,000	43,470,000	391,230,000
		103	904	178,760,000	268,140,000	-	446,900,000	44,690,000	402,210,000
		103	907	178,760,000	268,140,000	-	446,900,000	44,690,000	402,210,000
		103	1004	178,760,000	268,140,000	-	446,900,000	44,690,000	402,210,000
		103	1007	178,760,000	268,140,000	-	446,900,000	44,690,000	402,210,000
048.2207F	48F	103	406	172,040,000	258,060,000	-	430,100,000	43,010,000	387,090,000
		103	506	177,240,000	265,860,000	-	443,100,000	44,310,000	398,790,000
		103	706	180,680,000	271,020,000	-	451,700,000	45,170,000	406,530,000
		103	806	184,120,000	276,180,000	-	460,300,000	46,030,000	414,270,000
		103	1006	189,280,000	283,920,000	-	473,200,000	47,320,000	425,880,000
049.7145E	49E	103	305	181,000,000	271,500,000	-	452,500,000	45,250,000	407,250,000
		103	405	177,440,000	266,160,000	-	443,600,000	44,360,000	399,240,000
		103	505	182,760,000	274,140,000	-	456,900,000	45,690,000	411,210,000
		103	605	186,320,000	279,480,000	-	465,800,000	46,580,000	419,220,000
		103	705	186,320,000	279,480,000	-	465,800,000	46,580,000	419,220,000
		103	805	189,880,000	284,820,000	-	474,700,000	47,470,000	427,230,000
		103	905	195,200,000	292,800,000	-	488,000,000	48,800,000	439,200,000
		103	1005	195,200,000	292,800,000	-	488,000,000	48,800,000	439,200,000
054.0307I	54I	101	303	199,360,000	299,040,000	-	498,400,000	49,840,000	448,560,000
		101	503	195,560,000	293,340,000	-	488,900,000	48,890,000	440,010,000
		101	603	199,360,000	299,040,000	-	498,400,000	49,840,000	448,560,000
		101	703	199,360,000	299,040,000	-	498,400,000	49,840,000	448,560,000
		101	803	203,160,000	304,740,000	-	507,900,000	50,790,000	457,110,000
		101	903	208,840,000	313,260,000	-	522,100,000	52,210,000	469,890,000
		101	1003	208,840,000	313,260,000	-	522,100,000	52,210,000	469,890,000
		102	303	186,040,000	279,060,000	-	465,100,000	46,510,000	418,590,000
		102	403	189,840,000	284,760,000	-	474,600,000	47,460,000	427,140,000
		102	603	199,360,000	299,040,000	-	498,400,000	49,840,000	448,560,000
		102	703	199,360,000	299,040,000	-	498,400,000	49,840,000	448,560,000
		102	803	203,160,000	304,740,000	-	507,900,000	50,790,000	457,110,000
		102	903	208,840,000	313,260,000	-	522,100,000	52,210,000	469,890,000
		102	1003	208,840,000	313,260,000	-	522,100,000	52,210,000	469,890,000
057.7775H	57H	101	302	230,360,000	345,540,000	-	575,900,000	57,590,000	518,310,000
		101	402	219,360,000	329,040,000	-	548,400,000	54,840,000	493,560,000
		101	502	225,960,000	338,940,000	-	564,900,000	56,490,000	508,410,000
		101	602	230,360,000	345,540,000	-	575,900,000	57,590,000	518,310,000
		101	702	230,360,000	345,540,000	-	575,900,000	57,590,000	518,310,000
		101	802	234,720,000	352,080,000	-	586,800,000	58,680,000	528,120,000
		101	902	241,320,000	361,980,000	-	603,300,000	60,330,000	542,970,000
		101	1002	241,320,000	361,980,000	-	603,300,000	60,330,000	542,970,000

		102	402	204,480,000	306,720,000	-	511,200,000	51,120,000	460,080,000
		102	502	210,600,000	315,900,000	-	526,500,000	52,650,000	473,850,000
		102	602	214,680,000	322,020,000	-	536,700,000	53,670,000	483,030,000
		102	702	214,680,000	322,020,000	-	536,700,000	53,670,000	483,030,000
		102	802	218,760,000	328,140,000	-	546,900,000	54,690,000	492,210,000
		102	902	224,920,000	337,380,000	-	562,300,000	56,230,000	506,070,000
		102	1002	224,920,000	337,380,000	-	562,300,000	56,230,000	506,070,000
063.7924J	63J	102	304	218,760,000	328,140,000	-	546,900,000	54,690,000	492,210,000
		102	404	223,240,000	334,860,000	-	558,100,000	55,810,000	502,290,000
		102	504	229,960,000	344,940,000	-	574,900,000	57,490,000	517,410,000
		102	604	234,400,000	351,600,000	-	586,000,000	58,600,000	527,400,000
		102	704	234,400,000	351,600,000	-	586,000,000	58,600,000	527,400,000
		102	804	238,880,000	358,320,000	-	597,200,000	59,720,000	537,480,000
		102	904	245,560,000	368,340,000	-	613,900,000	61,390,000	552,510,000
		102	1004	245,560,000	368,340,000	-	613,900,000	61,390,000	552,510,000
063.4007K	63K	101	304	217,160,000	325,740,000	-	542,900,000	54,290,000	488,610,000
		101	404	221,600,000	332,400,000	-	554,000,000	55,400,000	498,600,000
		101	504	228,240,000	342,360,000	-	570,600,000	57,060,000	513,540,000
		101	604	232,680,000	349,020,000	-	581,700,000	58,170,000	523,530,000
		101	704	232,680,000	349,020,000	-	581,700,000	58,170,000	523,530,000
		101	804	237,120,000	355,680,000	-	592,800,000	59,280,000	533,520,000
		101	904	243,760,000	365,640,000	-	609,400,000	60,940,000	548,460,000
		101	1004	243,760,000	365,640,000	-	609,400,000	60,940,000	548,460,000
064.9250G	64G	101	301	249,120,000	373,680,000	-	622,800,000	62,280,000	560,520,000
		101	401	246,640,000	369,960,000	-	616,600,000	61,660,000	554,940,000
		101	601	258,960,000	388,440,000	-	647,400,000	64,740,000	582,660,000
		101	701	258,960,000	388,440,000	-	647,400,000	64,740,000	582,660,000
		101	801	263,920,000	395,880,000	-	659,800,000	65,980,000	593,820,000
		101	901	271,320,000	406,980,000	-	678,300,000	67,830,000	610,470,000
		101	1001	271,320,000	406,980,000	-	678,300,000	67,830,000	610,470,000
		102	301	245,960,000	368,940,000	-	614,900,000	61,490,000	553,410,000
		102	401	229,880,000	344,820,000	-	574,700,000	57,470,000	517,230,000
		102	601	241,360,000	362,040,000	-	603,400,000	60,340,000	543,060,000
		102	701	241,360,000	362,040,000	-	603,400,000	60,340,000	543,060,000
		102	801	245,960,000	368,940,000	-	614,900,000	61,490,000	553,410,000
		102	901	252,880,000	379,320,000	-	632,200,000	63,220,000	568,980,000
		102	1001	252,880,000	379,320,000	-	632,200,000	63,220,000	568,980,000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당첨자 제출서류**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가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있는 경우 제4조 제6항에 따른 국내 거주 유무 및 거주 기간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기록 대조 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 대조 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여권 사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 대조 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⑦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 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⑧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 사본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여권 발급 경력이 전혀 없는 세대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 사정 불인정 • 배우자 및 세대원의 출생 연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만 인정
	○		위임장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실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 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 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2.08.11.(목요일) 10:00~17: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2.07.26.(화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2022.08.12.(금요일) 10:30 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2022.08.12.(금요일)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6.17.)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the1st-city.co.kr)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45 1층 더퍼스트시티 송도 홍보관
■ 분양문의 : 032-851-5151

